

# 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 람	기관의장

제880호 2012. 3. 12.(월)

## 차 례

### 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2-319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자  
정정 통보안내 공시송달 ----- 1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인천광역시서구

편집 : 기획홍보실 [032-560-4140]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 - 319호

##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자 정정 통보안내 공시송달

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, 동법시행령 제5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자 정정 통보안내문을 우편(등기) 발송하였으나, “폐문부재”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(공고) 합니다.

2012. 03. 09.

### 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공고제목 :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자 정정 통보안내 공시송달
2. 처분근거 :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,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
3. 처분원인 : 불법유동광고물(벽보, 전단지, 입간판, 현수막 등) 게재
4. 공고기간 : 2012. 03. 09 ~ 03. 23.(15일간)
5. 공고대상

연번	대 상 자				과태료 부과금액(원)	반송사유	비고
	납세자	생년월일	주소	위반내용			
1	박홍만	1971.08.22	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955-25 3호	불법현수막 게첩	238,800	폐문부재	

6. 게시장소 : 인천서구청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관, 인터넷 홈페이지
7. 문의사항 : 인천광역시 서구청 녹지경관과 광고물관리팀(032-560-4183)

※ 공고기간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위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행정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